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4. 12(월)

문교사회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0. 3. 23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0. 3. 23

라. 상정일자

- 2010. 4. 5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 제안설명 : 황의식 문화관광체육국장
  - 검토보고 : 문교사회전문위원 유한경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개정이유

- 2010. 3. 4일 준공된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사용료를 정하고
- 그 밖에 조례의 내용 등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의 시설 명칭과 위치를 규정함.  
(안 별표 1)
-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의 전용사용료, 방송사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별표 2, 안 별표 6, 안 별표 8)

- 시립도원수영장 입장료, 강습료를 체육시설 이용사용료로 통합함.  
(안 별표 3)
-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시립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연수구 동춘동 LNG 3지구에 조성된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의 명칭과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그 밖에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고자 3월 24일 인천 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 조문 검토내용으로

-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안 별표 1)
  -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은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통하여 엘리트 선수 및 시민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연수구 동춘동 LNG 3지구내 98,879㎡의 부지에 국비 1,960백만원, 시비 10,046백만원, 지방채 12,700백만원 등 총 24,706백만원을 투자하여 2010년 3월 4일 준공함.
-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의 전용사용료, 방송사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별표 2, 6, 8)
  - 사용료가 문학경기장, 문학야구장, 삼산월드체육관 등 종전의 시립체육시설 사용료와는 비슷한 수준이나, 타 시·도의 사용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음.

특히, 중계방송사용료와 체육시설 상업사용료의 경우 종전의 시립체육시설과는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으나, 타 시·도에 비해 상당히 낮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됨(조례안 20쪽부터 22쪽까지 참조).

타 시·도보다 저렴한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의 사용료는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엘리트 선수 및 시민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점과 시민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도 있겠으나, 중계방송사용료와 체육시설 상업사용료의 경우 사용료 결정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시립도원수영장의 입장료, 강습료를 체육시설 이용사용료로 통합.

(안 별표 3)

- 종전에 별표 4, 별표 5로 별도 규정하였던 도원수영장의 입장료와 강습료를 요금 변동없이 체육시설 이용사용료로 통합하여 규정함.
- 그 밖에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 할 수 있도록 한자어나 일본어식 용어, 전문 용어 등의 어려운 법령용어를 쉬운 용어로 수정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

- 김용근, 이명숙, 정종섭 의원
  - 본 조례안이 시설 개관보다 늦어진 사유는?
  - 체육시설 사용료 결정 근거는?

< 답 변 >

-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 당초 시범운영 후 4월부터 요금 적용을 계획하였음.
  - 요금 책정은 타 시·도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우리 시의 기준에 맞도록 참고해서 요금을 책정하였음.

#### 5. 토론요지

가. 찬성 : 김용근, 이명숙, 최만용, 박창규, 오홍철, 정종섭 위원

나. 반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 · 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9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 중 “시장”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제10조제1항 중 “별표2,3,4,5,6,7,8과”를 “별표 2, 별표 3, 별표 6부터 별표 8 까지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호 중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을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에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제4호 · 제8조제4호 · 제13조제4항제2호 · 제16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3항 ·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6,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와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2조제1호 관련)

연번	명 칭	시 설 명	기 능	위 치
1	인천월드컵경기장 (문학경기장)	주경기장	육상·축구	인천 남구 문학동 482번지 일대
		보조경기장	육상·축구	인천 남구 문학동 482번지 일대
2	시립문학야구장		야 구	인천 남구 문학동 482번지 일대
3	시립도원체육관		농구·배구·핸드볼 등	인천 중구 도원동 12-155번지 일대
	시립도원수영장		수 영	인천 중구 도원동 47번지
4	인천삼산월드 체육관(Incheon World Gymnasium)	주경기장	농구·배구 등	인천 부평구 삼산동 458-1 일대
		보조경기장	농구·배구 등	
		인조잔디 축 구 장	축 구	
5	시립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		롤러스케이트 인라인하키	인천 연수구 동춘동 930번지 일대
6	시립가좌테니스장		테 니 스	인천 서구 가좌동 606-1번지 일대
7	시립옥련사격장		사격	인천 연수구 옥련동 1번지 일대
8	궁도장	시립계산궁도장	국 궁	인천 계양구 계산동 신1번지 일대
		시립수봉궁도장	국 궁	인천 남구 송의동 7-171번지 일대
9	시립수봉양궁장		양 궁	인천 남구 송의동 7-171번지 일대
10	인천국제벨로드롬 (서운사이클경기장)		싸이클	인천 계양구 서운동 110번지 일대
11	시립다목적운동장		하키, 정구	인천 남구 문학동 388번지 일대
12	인천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수영·배드민턴 등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46번지
13	인천광역시계산국민체육센터		수영·배드민턴 등	인천 계양구 계산동 907번지 2호
14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		축구·야구 등	인천 연수구 동춘동 1129번지 1호

[별표 2]

##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사용구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비 고			
		평 일	공휴일	평 일	공휴일				
시립도원수영장	주간	200,000	300,000	400,000	600,000	* 프로경기는 체육경기 외로 적용			
	야간	300,000	450,000	600,000	900,000				
시립도원체육관	주간	60,000	70,000	200,000	280,000	*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야간	70,000	100,000	280,000	390,000				
시립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	스피드스케이팅장	70,000	90,000	90,000	110,000	* 그 밖의 심야 등의 사용료는 야간 사용료에 준하여 적용 * 야간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피겨스케이팅장	50,000	70,000	70,000	90,000				
	하키장								
시립가좌테니스장	주간	20,000 (면당)	25,000 (면당)	35,000 (면당)	45,000 (면당)				
인천월드컵경기장(문학경기장)	육상장	40,000	60,000	110,000	170,000	* 축구, 실내야구연습장은 게임당 1일 2시간, 야구는 게임당 1일 3시간 사용을 기준한다 (프로경기는 제외)			
	축구장	70,000	100,000	170,000	210,000				
	보조경기장(주간)	40,000	60,000	110,000	170,000				
시립문학야구장	주간	40,000	70,000	110,000	140,000	* 연회장과 전시장의 1일 사용기준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야간	60,000	80,000	130,000	170,000				
인천삼산월드체육관(Incheon World Gymnasium)	주경기장	130,000	200,000	300,000	400,000	* 부대 시설 사용시 운영여건을 감안 별도 금액을 부과 징수 한다.			
	보조경기장	30,000	50,000	100,000	150,000				
	축구장	50,000	100,000	100,000	140,000				
송도 ING 종합스포츠타운	축구장	주경기장	70,000	100,000	200,000	300,000	* 프로경기의 경우 전용 사용료 원가 산출에 따라 전용 사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보조경기장	50,000	80,000	100,000	150,000			
		풋살구장	20,000	30,000	40,000	60,000			
	야구장	주경기장	60,000	90,000	120,000	180,000			
		보조경기장	40,000	60,000	110,000	160,000			
		실내연습장	70,000	100,000	140,000	210,000			
인천국제벨로드롬(서운사이클경기장)	구 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사이클	200,000	200,000	200,000	2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시립다목적운동장	장구코트(면당)	20,000	30,000	25,000	40,000	35,000	60,000	45,000	70,000
	하 키	60,000	90,000	90,000	120,000	120,000	180,000	180,000	240,000



[별표 3]

## 체육시설 이용사용료 (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간		1인당 사 용 료				비 고
			개 인	단 체	월회원	월강습	
시립도원수영장	1회		일반 2,000 군인· 청소년 1,500 노인· 어린이 1,300	일반 1,600 군인· 청소년 1,300 노인· 어린이 1,000	일반 38,000 군인· 청소년 32,000 노인·어 린이 19,000	일반 48,000 군인· 청소년 39,000 노인·어 린이 24,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는 동일소속팀 20인 이상으로 함</li> <li>· 롤러스케이트 대여료는 대여료는1,000원(동일 일기준)</li> </ul>
시립가좌테니스장	1회 1시간		1,000	3,000 (면당)	30,000	60,000	
시립동춘인라인 롤러경기장	주간		일반 1,500 군인· 청소년 1,000 어린이 600	일반 1,200 군인· 청소년 700 어린이 500	일반 30,000 군인· 청소년 20,000 어린이 12,000		
	야간		일반 2,000 군인· 청소년 1,500 어린이 1,000	일반 1,500 군인· 청소년 1,000 어린이 600	일반 40,000 군인· 청소년 30,000 어린이 20,000		
시립옥련 사격장	실 내	1회2시간	700	400			
시립수봉양궁장	1회2시간		2,100	1,400	20,000		
시립수봉궁도장 시립계산궁도장	1회2시간		1,400	1,000	14,000		
인천국제벨로드롬 (서운사이클경기장)	1회 1일		학생 5,000		경륜선수 300,000		
			일반 7,000		일반선수 100,000		
시립다목적 운동장	장구코트	1 회	1,000	3,000	30,000	60,000	
		주간					
		1시간	1,500	4,500	45,000	90,000	
		야간					

[별표 6]

## 체육시설 방송사용료 (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T·V		라디오		비 고
		국제	국내	국제	국내	
중 계 방 송	체육경기	40,000	30,000	20,000	15,000	*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
	체 육 외 행 사	70,000	60,000	30,000	21,000	
녹 화 촬 영	녹화 또는 녹음	중계방송의 반액				* 음성정보중계료는 15,000원
	경기 또는 행사촬영	T·V중계방송과 동일				
전 기 료		기본사용료				* 인터넷중계료는 텔레비전과 동일하게 적용
시립도원체육관		40,000				* 방송시설 사용료중 기본사용은 앰프 + 마이크 1대로 하며, 마이크 1대 추가시 3,000원 추가
시립도원수영장		50,000				
시립가좌테니스장		70,000				
시립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		70,000				
인천월드컵경기장 (문학경기장)	주경기장	80,000				
	보조경기장	60,000				
시립문학야구장		70,000				
인천삼산월드체육관 (Incheon World Gymnasium)		80,000				
인천국제벨로드롬 (서운사이클경기장)		70,000				
시립다목적운동장		70,000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		70,000				

[별표 8]

## 부속시설사용료 (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요 금	비 고
전 광 관	시립도원수영장 시립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 시립도원체육관 인천월드컵경기장(문학경기장) 시립문학야구장 인천삼산월드체육관 (Incheon World Gymnasium) 인천국제벨로드롬(서운사이클경기장) 시립다목적운동장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	$1\text{일기본료}(60,000) + (\text{전광관주변압기용량} \times \text{기본요금} \times \text{사용일수} / 30) + \text{실제사용전기관허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마추어경기 시는 기본료의 50퍼센트 감액</li> <li>· 야구장 전광관과 타워 동시 사용시는 전기수용 기본료 1개만 사용</li> <li>· 체육관 냉·난방 및 천정조명 시설 동시 사용시는 전기기본료 1개만 적용</li> </ul>
	전기 시립도원수영장 시립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 시립도원체육관 인천월드컵경기장(문학경기장) 시립문학야구장 인천삼산월드체육관 (Incheon World Gymnasium) 인천국제벨로드롬 (서운사이클경기장) 시립다목적운동장	$1\text{일기본료}(60,000) + (\text{수용요금} \times \text{사용일수} / 30) + \text{실제사용전기관허요금}$	
냉 난 방	LNG 시립도원수영장 시립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 시립도원체육관 인천월드컵경기장(문학경기장) 시립문학야구장 인천삼산월드체육관 (Incheon World Gymnasium) 인천국제벨로드롬 (서운사이클경기장) 시립다목적운동장	연료비 (시간당 60,000)	
천 정 조 명	시립도원수영장 시립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 시립도원체육관 인천월드컵경기장 (문학경기장) 시립문학야구장 인천삼산월드체육관 (Incheon World Gymnasium) 인천국제벨로드롬 (서운사이클경기장) 시립다목적운동장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	$1\text{일기본료}(60,000) + (\text{수용요금} \times \text{사용일수} / 30) + \text{실제 사용전기관허요금}$	
조 명 탑	시립도원수영장 시립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 시립도원체육관 인천월드컵경기장(문학경기장) 시립문학야구장 인천삼산월드체육관 (Incheon World Gymnasium) 인천국제벨로드롬 (서운사이클경기장) 시립다목적운동장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	$1\text{일기본료}(60,000) + (\text{수용요금} \times \text{사용일수} / 30) + \text{실제사용전기관허요금}$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거나, 중계방송(지상파 및 공중파(TV), 인터넷, 라디오 등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u>기타</u> 행위를 말한다.</p> <p>3.~8. (생략)</p> <p>9. “관람권”이라 함은 체육경기대회 및 <u>기타</u>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p> <p>10.~17. (생략)</p> <p>18. “일반행사”라 함은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u>시장</u>이 별도로 정하는 행사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 <u>그 밖의</u> ----- -----</p> <p>3.~8. (현행과 같음)</p> <p>9. ----- --- <u>그 밖의</u> ----- ----- -----</p> <p>10.~17. (현행과 같음)</p> <p>18. ----- ----- ----- ----- --<u>인천광역시</u>(이하 “<u>시장</u>”이라 한다)-----</p>
<p>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u>인천광역시</u> (이하 “<u>시장</u>”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p> <p>② · ③ (생략)</p>	<p>제3조(사용허가) ① ----- -----<u>시장</u>-----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체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p> <p>1.~6. (생략)</p> <p>7. <u>기타</u></p> <p>② (생략)</p>	<p>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 ----- ----- -----</p> <p>1.~6. (현행과 같음)</p> <p>7.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 (사용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p> <p>1.~3. (생략)</p> <p>4. <u>기타</u>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p>	<p>제7조 (사용 제한) ----- ----- -----</p> <p>1.~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의</u> -----</p>
<p>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p>1.~3. (생략)</p> <p>4. <u>기타</u>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p>	<p>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 ----- -----</p> <p>1.~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의</u> ----- -----</p>
<p>제10조 (사용료) ① 체육 시설의 사용료는 <u>별표2, 3, 4, 5, 6, 7, 8</u>과 같이 하며, 관람입장료는 <u>별표9</u>와 같이 정한다.</p> <p>②~④ (생략)</p>	<p>제10조 (사용료) ① ----- ----- <u>별표 2, 별표 3,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와</u> ----- -----</p> <p>②~④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⑤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체육시설내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와 기타 교육프로그램 사용료는 시설별 여건에 따라 필요시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⑤ ----- ----- <u>그 밖의</u> ----- ----- -----</p>
<p>제11조 (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①·② (생략) ③ 제2항 <u>각호</u>의 초청장, 초대권 등의 무료관람권은 전체 관람권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고 무료관람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초과 발생분에 대하여는 일반관람권과 동일금액으로 사용료를 징수한다.</p>	<p>제11조 (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각 호</u> ----- ----- ----- ----- ----- -----</p>
<p>제12조 (초과 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용 사용시 : 초과 시간당 <u>당해</u> 체육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li> <li>2. 이용 사용시 : 초과 시간당 <u>당해</u> 체육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li> <li>3. (생략)</li> </ol> <p>② (생략)</p>	<p>제12조 (초과 사용료) ①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 ----- <u>해당</u> -----</li> <li>2. ----- : ----- <u>해당</u> -----</li> <li>3. (현행과 같음)</li> </ol>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생략)</p> <p>②다음 각호의 경우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p> <p>1.~3. (생략)</p> <p>③다음 각호의 경우는 사용료를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p> <p>1.·2. (생략)</p> <p>④다음 각호의 경우는 사용료를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u>기타</u> 체육진흥 및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p>	<p>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각 호</u>-----</p> <p>-----</p> <p>1.~3. (현행과 같음)</p> <p>③---<u>각 호</u>-----</p> <p>-----</p> <p>1.·2. (현행과 같음)</p> <p>④---<u>각 호</u>-----</p> <p>-----</p> <p>1. (현행과 같음)</p> <p>2. <u>그 밖의</u> -----</p> <p>-----</p>
<p>제13조의2(이용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사용료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p> <p>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u>장애등급1급내지3급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u>)</p> <p>2.·3. (생략)</p>	<p>제13조의2(이용사용료 등의 감면) ---</p> <p>-----</p> <p>-----</p> <p>-----</p> <p>-----</p> <p>1. -----</p> <p>---<u>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u>---</p> <p>-----</p> <p>2.·3.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5조 (입장권) ① 체육시설에 입장할 때,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u>다음 각 호에 1</u>에 해당되는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p> <p>1.~3. (생략)</p> <p>② (생략)</p>	<p>제15조 (입장권) ① -----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p> <p>1.~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6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u>다음 각 호의 1</u>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p> <p>1.~4. (생략)</p> <p>5. <u>기타</u>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p> <p>② (생략)</p>	<p>제16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 -----</p> <p>1.~4. (현행과 같음)</p> <p>5. <u>그 밖에</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3조 (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u>당해</u> 체육시설 매표구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23조 (매표 및 검인) ① ----- ----- <u>해당</u>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